

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(제11조제2항 관련)

구 분	대 상 시 설	점 검 횟 수
1. 해빙기진단	석축, 옹벽, 법면(비탈면), 교량,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	연 1회(2월 또는 3월)
2. 우기진단	석축, 옹벽, 법면(비탈면), 담장, 하수도 및 주차장	연 1회(6월)
3. 월동기진단	연탄가스배출기, 중앙집중식 난방시설,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및 수목보온	연 1회(9월 또는 10월)
4. 안전진단	변전실, 고압가스시설, 도시가스시설, 액화석유가스시설, 소방시설 및 피난· 방화시설, 맨홀(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 다), 유류저장시설, 펌프실, 인양기, 전 기실, 기계실, 어린이놀이터, 주민운동 시설 및 주민휴게시설	매 분기 1회 이상
	승강기	「승강기제조 및 관리 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.
	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	매월 1회 이상
5. 위생진단	저수시설, 우물 및 어린이 놀이터	연 2회 이상

비고: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·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.